

긴급 입찰 사유서

□ 사업개요

- 사업명 : 경기도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기초공간정보구축 사업
- 예산액 : 5,4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0일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 2019. 6. 25.>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6. 1. 15., 2019. 6. 25.>

□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경기도 내 자연환경관리,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도시계획 등의 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고정밀 공간환경정보로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나,
-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경기도 전지역의 고정밀 비오톱 공간정보, 현장조사, 비오톱 속성정보 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식물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개화, 개엽 시기(4월)부터 공간정보 구축 및 현장조사의 신속한 진행이 필수적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2호 및 4호, 제6항에 의거, 사업발주에서 계약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급 입찰공고를 요청 드림